

우편물 위탁운송 용역계약 특수조건(육로운송)

목 차

제1조	목적	-----	1
제2조	용어의 정의	-----	1
제3조	운송업무 및 용역범위	-----	1
제4조	비밀유지의 의무	-----	2
제5조	성실의 의무	-----	2
제6조	교육의 의무	-----	3
제7조	운송의 안전의무	-----	3
제8조	운송료의 지급	-----	3
제9조	지체상금	-----	3
제10조	우편물 운송의 확인	-----	3
제11조	우편물의 수수장소	-----	4
제12조	운송차의 탑재 제한	-----	4
제13조	업무의 감독	-----	4
제14조	운송중의 사고	-----	4
제15조	손해배상	-----	4
제16조	계약의 해지	-----	5
제17조	권리의 양도금지	-----	5
제18조	운송료의 환수	-----	5
제19조	화물자동차 운용	-----	5
제20조	계약기간	-----	6
제21조	계약내용의 수정 및 추가계약	-----	6
제22조	기타	-----	6

제1조(목적) 본 계약은 우편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3호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와 우편물 운송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울지방우정청(위탁자)을 “발주처”라 하고, ○ ○ 운송사업자(수탁자)를 “계약상대자”이라 하여 “발주처”과 “계약상대자”의 당사자간의 권리·의무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집중국운송망 : 집중국간 운송구간을 말한다.
2. 교환망 : 집중국과 대전교환센터간의 운송구간을 말한다.
3. 우체국망 : 우체국간 및 우체국과 집중국간의 운송구간을 말한다.
4. 우편물 : 우편법 제14조에서 정한 우편물과 이에 쓰이는 물건으로서 운송용기에 체결된 상태(벌크 운송 포함)를 말한다. 단, 부피가 커서 운송용기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은 별도의 용기 또는 포장 자재를 운송용기로 인정한다.
5. 운송용기 : 운송용기는 운반차(파렛, 트롤리)와 우편자루 및 우편상자를 말한다.
[공파렛 · 공상자 · 공트롤리 · 공우편자루, 특채(우표, 통장 등)우편물 등 운송업무확인국장이 인정하는 운송용기 및 물품도 우편물로 인정한다.]
6. 운송편 : 우편물을 적재하고 운송하는 실차거리의 운송선로를 말한다.
7. 운송기관 : 우편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사업체를 말한다.
8. 시발국 : 우편물 운송선로상의 기점이 되는 최초 출발국을 말한다.
9. 운송업무확인국 : 해당 운송편의 우편물 운송에 관한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우편집중국을 말한다.
10. 정기운송 : 사전에 운송방법지정서로 지정된 운송편을 말한다.
11. 임시운송 : 정기운송 이외에 물량에 따라 추가로 운송하는 운송편을 말한다.

제3조(운송업무 및 용역범위) ① 집중국운송망, 교환망, 우체국망의 우편물 운송업무로서 그 용역 범위는 “발주처”가 운송방법지정서(우편업무취급세칙 제225조)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② “발주처”가 정기편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시행일 7일전까지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운송방법 지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“계약상대자”는 특별소통기간 및 농산물 수확기 등에 임시운송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③ “계약상대자”는 제1항 운송내용과 같이 우편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“발주처”가 지정한 장소 및 시간까지 성실히 운송하여야 한다.
④ 우편물의 상 · 하차는 “발주처”가 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“계약상대자”는 수량 확인 및 상 · 하차 작업을 수행한다.

⑤ 우편물 운송차량에 대한 우편물 적재 기준 및 방법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1기준에 따라 적재한다

- 적재방법(파렛, 날소포, 파렛과 날소포 병행)의 선택은 시발국 또는 운송업무확인국장의 요구에 의한다.

⑥ 본 계약의 운송편별 운송구간과 운송거리, 운송일정 등은 별표 2와 같다

⑦ 정기편의 변이사항(감차, 거리감축, 거리연장) 발생 시 해당 운송요금의 적용은 별표 3 단가표를 적용한다

⑧ “계약상대자”는 우편물을 운송하였을 때에는 “발주처”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 우편물 운송확인서를 작성하여 각 수수국의 우편물 수수책임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⑨ “계약상대자”는 2개국 이상 우편물 운송 시 중간 도착국에서 우편물을 하차 후 중간 도착국 우편물을 적재하고 최종 도착국까지 운송하여야 한다.

제4조(비밀유지의 의무) ① “발주처”와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기간 중 및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 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관련정보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상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누설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 및 우편법 제51조에서 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.

② 본 조항은 “계약상대자”의 종업원,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며, 본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“발주처”의 손해는 “계약상대자”가 배상하여야 하고, 제3자와의 분쟁은 “계약상대자”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계약만료나 해지(해제) 또는 “발주처”의 요구 시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처”가 제공한 정보와 그 복사물, 생산물 일체를 지체 없이 “발주처”에 반환하여야 한다.

제5조(성실의 의무)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“발주처”가 정하는 우편물 위탁운송 취급절차에 따라 우편물을 안전, 정확, 신속하게 운송하여야 한다.

② 위탁 운전원이 월2회 이상 운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“발주처”는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운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“계약상대자”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“계약상대자”의 운전원은 복장 및 두발을 단정하게 하고, “발주처”의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명찰을 착용하고 우편물 운송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④ “계약상대자”는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편별 운송구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량과 운전원을 지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.

⑤ “계약상대자”는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직접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목록(명의를 포함)을 “발주처”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“발주처”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교육의 의무)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운송원에게 반드시 계약서 및 우편물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사전 교육 후 운송업무를 시켜야 하며 동일 내용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운송원 연락처(핸드폰번호)를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야간 상황실(비상연락망)을 운영하고 매일 우편물 배치일보를 “발주처” 및 우편집중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“발주처”는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방법, 실적관리 등을 별도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운송의 안전의무)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우편물 운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시행 전일까지 노사분규 등에 의한 파업 또는 작업지연 시 대처 방안을 “발주처”에 제출하여야 하며, 우편물 운송에 투입된 차량에 대하여는 우편물 운송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CI 표시를 하여야 한다
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운송원이 과도한 업무로 우편물 운송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절한 복무 배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제8조(운송료의 지급) ① “발주처”는 우편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3호에 의하여 계약 체결된 운송수수료로서 매월분을 익월 15일까지 “계약상대자”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. 다만, “계약상대자”의 청구가 지연되거나 성립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.

② 천재지변,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된 구간별 운송 횟수에 미달한 때에는 계약된 해당구간의 1회 운송단가를 적용하여 당월지급액에서 감액 지급한다.

③ “계약상대자”는 제1항의 운송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지급기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“발주처”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우편물 운송수수료 중에서 제9조 지체상금과 제15조의 손해배상액을 상계할 수 있다.

제9조(지체상금)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제3조에서 정한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1시간이상 지연 운송되었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된 매시간 마다 해당편의 당월 운송료의 5/1,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“발주처”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지연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금액을 포함하여 “발주처”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우편물 운송의 확인) “계약상대자”는 우편물을 운송하였을 때에는 “발주처”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 우편물 운송확인서 2부를 작성, 각 수수 우편집중국의 우편물 수수책임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우편물의 수수장소) ① 우편물의 수수장소는 당해 우편물 수수국의 발착장 또는 문전수수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우체국의 차량 출입이 곤란할 때에는 당해 우체국에서 가까운 주차 장소에서 수수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송차의 탑재 제한) “계약상대자”는 운송업무 위탁계약에 의한 우편물 운송중인 차량에는 “발주처”가 지정한 운송요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“발주처”가 지정한 운송업무 확인공무원 및 우편물 이외의 사람 또는 물건을 탑재시켜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업무의 감독)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이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우편물 운송에 대하여 “발주처”가 지정하는 운송업무확인 공무원의 지휘, 감독을 받아야 한다.

② “발주처”는 제1항의 업무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 “계약상대자”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“계약상대자”는 우편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해당 우편집중국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우편물 발송 시간대에 소속 차량 및 운전원을 지휘·통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운송중의 사고) ① 우편물 운송도중(상하차시 포함)사고로 인하여 우편물 운송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즉시 운송업무확인국에 통보하고 우편물은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.

1.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운송이 불가능 할 때에는 즉시 대체 자동차로서 신속하게 운송하여야 한다.

2. 대체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도로장애 등으로 자동차에 의한 운송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편집중국에 운송한 후 운송업무확인국의 지시에 따른다.

3. 위 1,2호의 조치가 불가능 할 때에는 우편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고 복구를 기다려 운송한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운송원 등 기타 종사원이 위탁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“발주처”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위①항 1호의 대체 차량의 경우도 또한 같다.

③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 위반, 차량관리 상태 부실 등 위탁운송차량의 안전운행 및 우편물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“발주처”는 이를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
제15조(손해배상) “계약상대자”는 우편물 운송중 우편물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“발주처”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1. 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“발주처”가 이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

2. “발주처”가 제공한 우편물 운송용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운송용구의 구입 실비금액

3. 사고우편물 운송 등 사고처리를 위해 발생한 비용은 실비금액

제16조(계약의 해지) “발주처”는 “계약상대자”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운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

2.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결행하거나 운전원의 잦은 변경으로 우편물의 안정적 운송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

3. “계약상대자”의 작업지연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월 3회 이상 운송을 지연시켰을 때

4. 지연운송으로 지체상금액이 월평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 될 때

5. 운송사고의 빈발로 우편사업의 공신력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

6. 제도의 변경이나 운송망 조정 등 “발주처”의 사정이 있을 때

7. “발주처”가 지정한 검송 구간 외에 임의로 “계약상대자”가 자체 검송으로 운행하였을 때

8.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정기 운송편을 제19조에 정한 직접 운송으로 하지 않을 때

9. “발주처”에서 차량관제를 위해 설치 요청한 사항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

제17조(권리의 양도금지)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“발주처”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위임(위탁), 하도급(대행)을 할 수 없다.

제18조(운송료의 환수) 이 계약에 의하여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운송료를 지급함에 있어 위탁운송료의 과오청구 등으로 운송료가 과다 지급되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“발주처”의 운송료 환수 요구에 응해야 한다. 이는 과년도 지급분 운송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19조(화물자동차 운용)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안전한 우편물 운송을 위하여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소속된 차량과 “계약상대자”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(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)소속의 화물자동차로 직접 운송을 하여야 하며, 고장 등에 대비하여 여유 차량을 보유하는 등 대체 운용계획 등을 수립·시행하여 원활한 운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차량은 적제탑이 있는 유개 차량으로 우편물 안전 운송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.

③ 운송중에는 잠금장치 등 도난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운송차량 적재 공간 활용이 가능한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영상을 최소 7일간 보관해야 한다.

④ 제7조의 우편물 운송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CI 표시 후 계약 종료 또는 차량용도 변경 시 우편물 운송 차량과 관계없음을 알 수 있도록 “계약상대자”의 비용으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.

제20조(계약기간) ① 본 계약 총 기간은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. 단,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계약해지 시 새로운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수탁자가 우편물 운송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우편물 운송업무를 제공해야 한다.

- ② “발주처” 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“발주처”와 “계약상대자”는 도로신설, 다리개통 등으로 운송거리가 조정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 단, 거리는 인터넷포털 네이버 지도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하며, 이견이 있는 경우 합동 실사 후 반영한다.

제21조(계약내용의 수정 및 추가계약) ①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우체국, 집중국 또는 물류센터가 신설·폐국 등 변동사항으로 운송망의 수정을 요하거나 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“발주처”와 “계약상대자” 상호 협의하여 수정 및 추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“발주처”와 “계약상대자” 상호 협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우편물 물량에 따라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 운송시간(출발시간) 조정할 수 있다.

제22조(기타)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가름할 수 있다. 이 경우 문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
②이 계약의 조문해석 및 취급절차에 관하여 “발주처”와 “계약상대자”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“발주처”의 결정에 따른다.

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“발주처”와 “계약상대자”의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“발주처”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(서린동)
서울지방우정청

“계약상대자” ○○시 ○○구 ○○ 동 000
○○운송사업자

[별표 1]

차량 톤급별 파렛 최대 적재기준(제3조제5항 관련)

구 분	차량 톤급별					비 고
	2.5톤	4.5톤	5.0톤	8.0톤	11.0톤	
롤파렛	5	7~8	10~12	14~15	18~19	
평파렛	3	5	7~8	10	12~13	

1. 차량 적재기준에 따라 적재 후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 1파렛 미만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낱소포를 적재할 수 있다.
2. 적재방법(파렛, 낱소포, 파렛과 낱소포 병행)의 선택은 시발국 또는 운송업무 확인 공무원의 요구에 의한다.

[별표 3]

[별표 2]

위탁운송 단가표(제3조제7항 관련)
(추후 송부)

운송방법 지정서(제3조제6항 관련)

운송선로명 /편명	차종 (본) (탑승 인원)	운송 거리 (km) (소요 시간)	운송순로 및 시각				운송일정	운송업무 확인국
			구분	순로1	순로2	순로3		
동집센터왕2-4	11.0	172.6	수수국명	동서울집	교환센터		월~금 (공휴일 제외)	동서울집
	(1인)	03:00	출발시각	23:30				
			도착시각		02:30			
			구간거리					
동집광주집왕 1-2	8.0	286.0	수수국명	동서울집	광주집		월~금 (공휴일 제외)	동서울집
	(1인)	04:50	출발시각	23:40				
			도착시각		04:50			
			구간거리					
동집전주집왕 1-3	8.0	188.5	수수국명	동서울집	전주집		월~금 (공휴일 제외)	동서울집
	(1인)	04:40	출발시각	23:30				
			도착시각		03:40			
			구간거리					
동집진주집왕 1-1	8.0	328.9	수수국명	동서울집	진주집		월~금 (공휴일 제외)	동서울집
	(1인)	07:00	출발시각	22:00				
			도착시각		04:00			
			구간거리					
동집대구집왕 1-3	8.0	272.9	수수국명	동서울집	대구집		월~금 (공휴일 제외)	동서울집
	(1인)	04:10	출발시각	23:00				
			도착시각		03:00			
			구간거리					
동서울물부산집 왕1-1	8.0	371.0	수수국명	동서울물	부산집		월~금 (공휴일 제외)	동서울물
	(1인)	07:00	출발시각	23:30				
			도착시각		05:30			
			구간거리		421.1			
동집부산집왕 1-4	8.0	371.2	수수국명	동서울집	부산집		월~금 (공휴일 제외)	동서울집
	(1인)	05:30	출발시각	22:30				
			도착시각		04:30			
			구간거리					
국제물류센터왕 북1-2	11.0	423.2	수수국명	국제물류	교환센터	국제물류	월~토 (공휴일 제외)	국제물류
	(1인)	10:00	출발시각	19:30	01:30			
			도착시각		23:00	04:30		
			구간거리		211.6	211.6		
국제물류센터왕 북1-3	8.0	423.2	수수국명	국제물류	교환센터	국제물류	월~토 (공휴일 제외)	국제물류
	(1인)	10:00	출발시각	20:00	02:00			
			도착시각		23:30	05:00		
			구간거리		211.6	211.6		
동서울물창원집 왕1-1	8.0	347.4	수수국명	동서울물	창원집		월~금 (공휴일 제외)	동서울물
	(1인)	06:40	출발시각	23:30				
			도착시각		05:00			
			구간거리					

[별지 제1호서식]

우편물 운송 수수료 청구서

일금 _____ 원정(₩ _____ 원)

위와 같이 _____ 년 _____ 월분 우편물 운송수수료를 운송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.

_____ 년 _____ 월 _____ 일

○ ○운송회사 (인)

○○우정청장 귀하